

□ 이용금지 시설

- (근거조항)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제5항
 -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시설(제13조), 안전진단 후 재사용 불가판정을 받은 시설(제16조 제5항)
- (조치의무)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, 폐쇄, 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통보

□ 이용금지 조치

- (관리주체) 불합격 판정 시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
- (시·군·구) 불합격 시설 현장방문(이용금지 조치상태 확인 → 조치 미비사항 사정 권고), 소관지역 내 이용금지 놀이시설 이용자제토록 지역주민에 전파

□ 이용금지 방법

- (이용금지 표시) 이용금지 알림판, 현수막 등 이용
 - (표시내용) 안전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 알림
 - (표시장소) 놀이시설 입구, 이용 안내판, 개별 놀이기구별로 부착
 - (표시방법)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(1m×1m) 이상으로 부착
- (출입 봉쇄) ‘이용금지’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 이용
 - 조합놀이기구, 미끄럼틀, 그네 등 진입부가 있는 진입부 원천봉쇄
 - * 봉쇄부 사이 틈을 통해 진입 가능함을 유의하여 빈틈이 없도록 조치
- (이용 금지)
 - 미끄럼틀, 정글짐, 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및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 실시
 - 그네, 회전기구, 공중놀이기구, 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작동 불가토록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

□ 이용금지 방법 예시

- 이용금지 안내판(안) (1m×1m)

이 용 금 지

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**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 금지된 시설**로서, 안전검사 합격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,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○○유치원장 김안전
(문의전화 : 02-1234-1234)

- 시설별 이용금지 픽토그램(권장사항)

			
정글짐	회전놀이기구	건너는기구	미끄럼틀
			
시소	오르는기구	그네	공중놀이기구

- 봉쇄 테이프(안)



□ 이용금지 조치사례



이용금지 안내 현수막 부착



이용금지 안내판 놀이기구 부착



조합놀이대 이용금지(진입부 봉쇄)
*진입부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



철봉 이용금지(활동공간 막음)



시소 이용금지(고정부 연결, 결박)



그네 이용금지(활동공간 막음)
*그네 안장을 고정부에 결박 보완